

医療保險코너



문) 요관성형 또는 요관협착 등이 올 수 있는 비뇨기계 질환에 사용하는 Stent 등에 대하여 재료대 인정여부 및 삽입수기료 제거료 등의 산정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Stent 등 (Antigrade Nephrostomy Pigtail Set, Double J. Ureteral Stent, Urinary Divereion Stent)으로 요관협착 및 수신증을 치료할 경우 수가 및 재료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삽입수기료에 있어서는 방광경하 삽입시는 방광경검사(9450-773)의 소정금액, 경피적 삽입시는 경피적 신우루 설치(자341-1)소정금액의 50%에 해당되는 금액, 관혈적삽입시는 상부요관절석술(자342-가) 소정금액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산정합니다.

제거료에 있어서는 같은 치료를 하기 위하여 삽입 유치한 Stent 등의 제거료는 소정삽입수기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합니다.

같은 Stent는 1회용이라하나 1~3회 소독 사용이 가능하고 대한의학협회와 대한병원협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구입가가 5만 1천원~5만 2천원이라고 하므로 3회 사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료비용은 1만 5천원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테타, 가이드와이어 및 세트에 포함된 다른 재료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요양취급기관의 구입가가 4만 5천원 이하일 경우에는 구입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문) 조직형검사(나-481, 나-482, 나-483)

및 HLA교차시험은 장기이식, 골수이식, 친자확인 등에 필요한 검사로 장기이식환자에게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장기이식에 앞서 조직형검사를 수용자와 공여자 모두가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검사입니다. 공여자는 수술공여자로서의 적합성 여부에 관계되는 검사라서 보험급여가 될 수 없다하여도 수용자는 장기이식술이 시행되었을시는 보험급여가 되나 수용자가 조직형검사를 시행하고 조직형이 같은 공여자가 없어 장기이식술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수용자가 실시한 조직형검사(나-481, 나-482) 및 HLA 교차시험(나-484) 검사료가 보험급여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장기이식을 받고자 하는 환자나 장기공여희망자에게 공여 적합성 여부를 알기 위한 검사는 비급여대상이나 공여 희망자가 입원하여 장기를 제공한 경우 공여자에 대한 검사 등 비용은 입원한 날로 부터 요양급여 대상이 됨을 급여 1492-44757호('85. 8. 18)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여자로 결정된 자가 입원하여 장기를 제공한 경우에는 장기공여자 및 환자에 대한 HLA Typing 검사는 각각 1회씩 보험급여가 되는 것입니다. HLA교차시험은 모든공여 희망자에게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공여희망자중 HLA Typing A.B.C 및 DR검사결과 장기이식이 가능환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공여자로 결정된 자에게만 실시하는 것이 상례이며 이 경우 HLA교차시험료는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에게만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HLA Typing A. B. C 및

DR 검사결과 상호 적합하더라도 HLA교차시험에서 부적합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장기이식을 시행치 아니하므로 같은 교차시험비용은 공여희망자의 진찰 및 검사비용을 포함하여 비급여가 되는 것입니다.

▣ 요추간척추디스크 탈출증을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카이모파파인 약제를 주입하여 치료하는 경우 수가는 척추간판탈출증 수술(자-49) 소정금액의 30%를 산정하도록 급여 1492-29155 호('84. 10. 23)로 시달되었으므로 C-Arm 형 영상증폭장치로 「다-5 다 주2」와 필림 14×17 1매, 9.5×9.5 3매, 콘레이 30cc / 바이알 재료대의 인정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카이모파파인 주사에 의한 요추간척추디스크탈출증 치료방법은 방사선영상증폭장치를 이용하여 디스크내의 주사할 부위 앞, 뒤, 측면, 양쪽에 영상을 통하여 관찰하여 디스크내에 주사침을 찌르고 조영제(예: 콘레이)를 소량 주입한 후 이물질의 확산, 흡수를 위해 최소한 15분 정도 경과한 뒤 불투과성 물질이 제거되면 주사침을 이용하여 Disease(Brand of Chymopapain)를 주사합니다. 그러므로 같은 방법에 적용할 때에는 척추간판탈출증 수술(자-49)의 소정수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되 방사선영상증폭장치에 의한 조영술을 산정할 수 없으나 조영에 소모된 필름 및 조영제의 재료대는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isease를 주입하기 위하여 디스크내로 주사침을 찌르기 전에 미리 기관내 삽입관에 의한 전신마취 또는 국소마취를 실시하고 있는데 의사의 진료방법 및 숙련도에 따라 정맥마취를 하는 요양취급기관이 있음에도 진료비 심사기관이 정맥마취료 대신 정맥주사료로 삽감 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요양취급기관이 그 이후 마취료를 인정 받을 수 있는 마취료가 비싼 기관내 삽관에 의한 전신마취를 실시 청구하는 경우 진료비심사의 공정성 결여로 오히려 진료비 상승결과를 가져온 것이므로 이와같은 일이 없도록 해당 진료비심사기관과 요양취급기관은 즉시 시정 조치하기 바랍니다.

▣ 심장질환 환자에게 실시중인 His속 심전도검사는 보사부급여 1492-1806호 ('84. 2. 7)로 회시한 심장전기생리학적검사에 준용하여 비급여로 처리되어야 하는지, 만약 급여가 가능하다면 준용항목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His속 심전도검사는 심장전기생리학적검사에 해당되므로 비급여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오류역학검사에 있어서는 방광내압 및 요도내압측정 또는 근전도검사를 동시에 시행합니다. 이 경우 사용되는 1회용 Diagnostic를 방광내압 및 요도내압측정시 각각 1개씩의 카테타를 사용하는데 같은 재료를 별도 산정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오류역학검사에는 주로 Ureteral Catheter 등 재료대를 별도 인정하지 아니하는 카테타가 사용되고 있는데 같은 검사에 Diagnostic Catheter와 같은 고가의 특수진단용 자료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진료수가기준 제 9장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10)-26 및 요양급여 기준Ⅱ(진료기준)-1-1마에 의거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본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 소아의 중이내튜브유치술을 시행시 종전에는 입원후 전신마취하에 시행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외래에서 리도카인을 Drip한 후 「이온토포래시스」라는 기구를 사용하여 고막 마취후 시행하고 있는데 이 경우 진료수가 산정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중이내튜브유치술은 주로 어른에게는 국소마취하에 실시하기가 곤란하여 전신마취후 실시하는 것이므로 외래에서 국소마취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일부요양취급기관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온토포래시스를 사용하여 중이내튜브유치술은 시행한 경우에도 중이내튜브유치술(자-562)의 소정금액을 산정하므로 진료수가기준 제 6장 마취료산정지침(7)에 의거 마취료는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실제 사용한 마취약제(리도카인)비용만 산정하여야 합니다.*